

2021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소재부품장비 기업파견 지원사업」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1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소재부품장비 기업파견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융합혁신지원단」 소속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복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융합혁신지원단」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지원

※ 융합혁신지원단: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 소부장 분야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204)(붙임2) 참고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공공연 연구인력의 파견, 출장 등 현장지원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차세대 주력기술 및 제품·서비스 확보 지원

· (지원기간) 과제별 1~3년(자율제시),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계속지원여부 검토

·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3억원/년 내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업) 별도

○ 지원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융합혁신지원단」(37개 기관)

· (참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소부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산업부 고시 제2021-5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사업특징

- (기업수요기반 공동연구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부장 기업 수요지원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정출연 등 융합혁신지원단 37개 기관
 - (참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
- (기업현장지원) 연 3개월(90일) 이상*의 출장, 파견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수요를 근거리에서 지원
 - * 연구인력(연구과제책임자) 및 내부연구원의 출장, 파견기간을 모두 포함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1년 10월 26일(화) ~ 11월 15일(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제출
 - (온라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담당자 이메일(mihi@nst.re.kr)로 전자문서 제출
 - (오프라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 제출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5층

○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여부
①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 서류(첨부참조) * 기타증빙 서류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가감점 증빙서류 등	필수
②	②-1. 「산업부 고시 제2021-5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해당시
	②-2.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확인서(연구개발계획서 별첨2 참조) * ②-1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②-1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업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업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검토에서 미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제 선정 불가함	②-1 미해당시 필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①신청기한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 ②제출서류 미비, ③타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④신청자격 미적격 등에 해당하는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 신청기관은 접수과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검증 후 증빙서류 제출
-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수요(차세대 주력 기술 등)를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는 참여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융합혁신지원단」의 연구인력(연구책임자)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공(연) 소속 내부연구원은 연구인력(연구책임자) 포함 최대 3인까지 가능(연구인력 외 2인은 위촉직연구원 가능)
- 연구인력(연구책임자)은 융합혁신지원단 ‘정규직 연구원’ 또는 ‘정년후 재고용 연구원’으로 함
 - * 융합혁신지원단은 과제기간 중 연구인력의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도래 시, 과제 수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파견, 출장기간은 3개월(90일) 이상으로 하되, 비연속적인 출장, 파견의 경우에 1개월은 통상근무일수 21일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과제별 지원 및 수행기간은 1~3년으로 하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1년을 초과하는 다년도 연구개발과제는 매년 연차 점검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검토함
- 선정과제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연구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편성시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내에 회계법인 정산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함
- 간접비는 기관별 고시비율을 따르되, 고시비율 이내에서 기관별로 조정 가능함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노트(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 참고)
-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3억원 내외로 지원되며, 참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은 총 연구개발비 대비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이상이어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동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수 제한(3책5공)에서 제외됨

[참고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현금부담 비율]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일반적 적용	가이드라인 적용	소부장 으뜸기업 및 강소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연구개발비의 80%
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구개발비의 65% 이상 ~ 75% 이하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일반적 적용	가이드라인 적용	
중소기업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은 '21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3. 선정 방법 및 절차

□ 선정방법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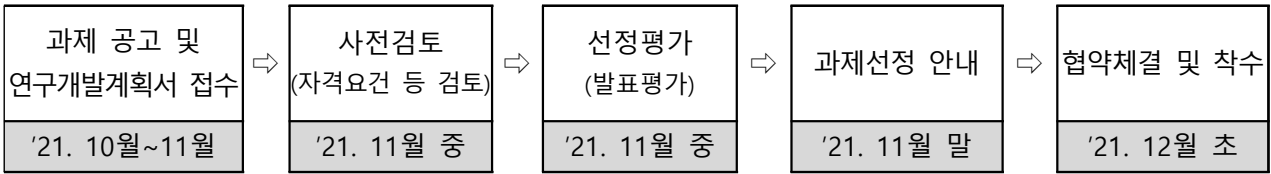
- (선정방법) 산·학·연 및 소부장 분야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실시
 - 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로 하고, 평가위원과 연구책임자 간 질의·응답 후 평가결과 도출
 - ※ 선정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되므로 발표자료 준비 필요
- (선정기준) 참여기업(20점), 연구인력(30점), 연구주제(50점)
 - 지원가능 후보 과제(6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14개 과제 내외)

【평가기준 및 배점】

항목	평가지표	배점(점)
참여기업	▶ 참여기업 대상(과제분야와의 연관성, 기업 요건, 경영·재무역량)의 적절성	10
	▶ 참여기업 R&D역량(관련기술 보유, 연구장비·시설·공간 등 인프라 보유 등)	10
연구인력	▶ 참여인력 연구분야와의 부합성	10
	▶ 사업 수행 전문성 및 우수성	10
	▶ 사업 전념 가능성	10
연구주제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15
	▶ 사업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	15
	▶ 사업비 규모 및 산정·집행의 적절성	10
	▶ 사업의 기대성과 및 성과창출(기술 유망성 및 상용화 가능성 등)의 적절성	10
합계	-	100

- (우대사항) 소부장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3점), 소부장 강소기업(3점),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3점)에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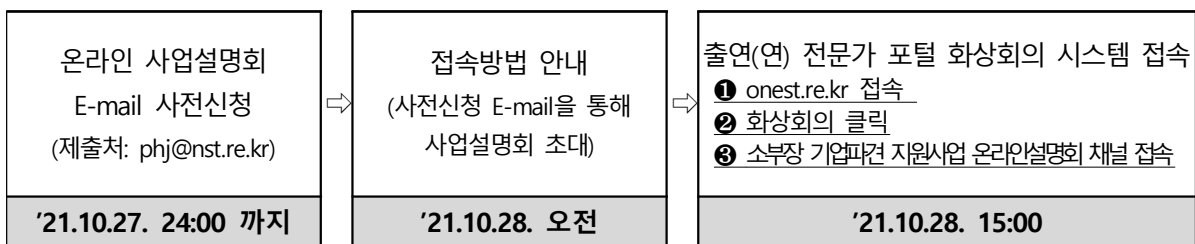
4. 기타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과견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과견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적용함

5. 사업설명회

- 「공공연 연구인력 소재부품장비 기업과견 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일정 : '21.10.28.(목) 15:00
 - 참여방법 :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과견 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접속
 - ※ 크롬(Chrome) 브라우저로 이용 필수

[온라인 사업설명회 상세 참여방법]



6.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담지원단

- (Tel) 044-287-7385, 7386 / (E-mail) mihi@nst.re.kr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 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이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분	분과	기관명	비고
1	기초소재 (11)	한국화학연구원	대표기관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		FITI시험연구원	
5		다이텍연구원	
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7		한국섬유소재연구원	
8		한국신발피혁연구원	
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1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2	응용소재 (5)	한국재료연구원	대표기관
13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4		한국세라믹기술원	
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		고등기술연구원	
17	전자부품 (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대표기관
18		한국광기술원	
1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2		나노융합기술원	
23	모듈·부품 (5)	한국자동차연구원	대표기관
2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5		건설기계부품연구원	
26		대구기계부품연구원	
2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8	시스템·장비 (10)	한국기계연구원	대표기관
29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0		한국원자력연구원	
31		한국전기연구원	
3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6		한국나노기술원	
3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간사)기관